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지침

2019. 2.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지침

차 례

제1장 총 칙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사업운영체계	2
3-1. 추진체계	2
3-2. 역할	2
4.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4-1. 심사위원회의 구성	3
4-2. 심사위원회의 운영	4

제2장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1. 추진절차	4
2. 사업계획의 공고 및 접수	5
2-1. 사업공고	5
2-2. 지원제외대상	5
2-3. 지원신청서 접수	5
5. 마케팅 지원	5
5-1. 마케팅수행	5
5-2. 지원범위	6
5-3. 지원내용	6

제3장 무역사절단 파견지원

1. 추진절차	7
2. 사업계획의 공고 및 접수	7
2-1. 사업공고	7
2-2. 지원제외대상	7
2-3. 지원신청서 접수	7
3. 무역사절단 지원	8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8. 04. 04.

개정 2018. 06. 22.

개정 2019. 02. 27.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5-1. 무역사절단 수행	8
5-2. 지원범위	8
5-3. 지원내용	8
5-4. 집체교육	8

제4장 사후관리

1. 사후지원	9
2. 성과관리	10
3. 제재조치	10

제5장 기타

1. 이의신청 및 처리	10
2. 비밀유지	10
3. 우수과제발굴	11
4. 서류보관	11
5. 해석	11

제1장 총칙

1 목적

1.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이하 “수출지원”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수출지원”은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수출 역량강화를 통해 국내·외 판로를 다변화할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사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마케팅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수출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란 “수출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중기부”의 장애인기업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7. “선정심사”란 “참여기업”의 지원 신청서를 대상으로, “수출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심사절차를 말한다.
8. “심사위원회”란 “수출지원”의 “선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수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9. “선정기업”이란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출지원”을 받는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10. “마케팅지원”이란 “수출지원” 중 해외 온라인 포털을 활용하여,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무역사절단지원”이란 “수출지원” 중 사전 바이어 발굴·매칭,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마케팅기관”이란 “센터”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선정기업”에게 “마케팅지원”, “무역사절단 파견”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업 운영체계

1. 추진체계



2. 역할

- 가. 총괄기관 “중기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 2) 사업 센터 관리·감독
 -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나. 전담기관 “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출지원”의 세부계획 수립, 점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2) “수출지원”의 연간계획 수립
- 3) “수출지원”의 “선정기업” 지원효과 평가, 사후관리
- 4) 사업종료 후 “수출지원”의 “선정기업” 성과 관리
-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다.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출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사”수행
- 2) “수출지원”개선 방안에 관한 조언

라. “참여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출지원”에 대한 지원 신청서 제출
- 2) “선정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마. “선정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출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센터”와 “마케팅기관”에 대한 협조
- 2) “수출지원”의 사후관리에 대한 협조

바. “마케팅”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선정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제반 활동
- 2) “마케팅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

4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의 구성

- 가. “센터”는 “수출지원”의 효율적인 “선정심사”를 위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나.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 2)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 3)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 4) 관련분야(무역, 기술, 마케팅 등) 박사학위 소지자
- 5)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6)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센터”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 2) 참여기업에 소속된 자 또는 3년 내 재직하였던 자
- 3)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심사위원회의 운영

가. “센터”는 공고기간 “참여기업”의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센터”는 심사일정, 심사기준, 심사방법, 심사지표,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선정심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사업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류의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참여기업”에게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지원신청서류를 참고하여,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

마. 예산범위내에서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바. “선정심사”시 센터 교육수료, 센터 입주기업,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센터 시제품제작 지원업체, 여성 장애인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사. “선정심사”시 “참여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2장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1 추진절차



2 사업계획의 공고 및 접수

1. 사업공고

본 사업은 “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공고를 통해 공고한다. 필요에 따라 기업마당(www.bizinfo.go.kr) 등 유관기관을 통해 공지/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2. 지원제외대상

가. “참여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휴·폐업 중인 기업
- 2) 마케팅 지원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3) 마케팅 지원기간 중 지원업체의 비협조 또는 사업포기 시 향후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나.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

- 1) “참여기업”은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중 지원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참여기업”은 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접수처로 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하여야 한다.

나. 반려

- 1) “센터”는 지원신청서류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2) “센터”는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마케팅 지원

1. 마케팅 수행

가. “마케팅기관”은 “선정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지원범위 및 내

용, 일정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때 “마케팅기관”은 해당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센터”는 가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 “마케팅지원”을 착수한 “마케팅기관”은 마케팅 내용 등을 포함한 수행일지를 수행일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마케팅 수행과정에 대해 “센터”에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지원범위

가. “마케팅기관”은 계약완료시까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원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내 “선정기업”의 비협조, 사업포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나. 가항의 상당한 이유로 계약 기간 내 “선정기업”에 대한 “마케팅지원”이 미흡할 경우, “마케팅기관”은 사후 관리를 통해 “선정기업”의 “마케팅지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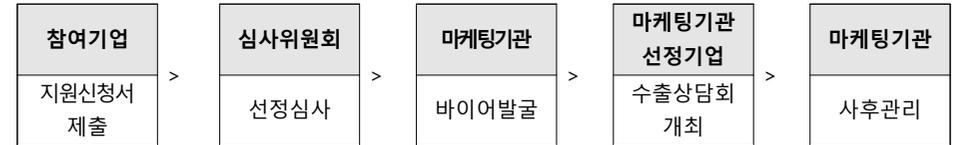
3. 지원내용

가. 본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해외 주요 포털 內 홍보용 상품페이지 제작 및 구축을 통한 홍보
- 2) SNS, 블로그 마케팅 지원
- 3) 해외 주요 포털사이트 기반 검색 마케팅 지원
- 4) 업체별 제품 특성에 맞는 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지원
- 5) 해외 바이어 정보 제공 및 잠재 바이어 마케팅
- 6) 기업별 관심국가 해외 바이어 컨택 및 관심도 분석 보고서 제작
- 7)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통역지원 포함)
- 8) 기업별 관심국가 해외시장 보고서 제작
- 9) 해외 바이어 구매요청에 대한 대응 지원

나. 가항 외에 “선정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 “마케팅기관”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추진절차



2 사업계획의 공고 및 접수

1. 사업공고

본 사업은 “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공고를 통해 공고한다. 필요에 따라 기업마당(www.bizinfo.go.kr) 등 유관기관을 통해 공지/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2. 지원제외대상

가. “참여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휴·폐업 중인 기업
- 2) “무역사절단지원” 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3) “무역사절단지원” 기간 중 지원업체의 비협조 또는 사업포기 시 향후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나.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

- 1) “참여기업”은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중 지원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참여기업”은 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접수처로 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하여야 한다.

나. 반려

- 1) “센터”는 지원신청서류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2) “센터”는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3 무역사절단 지원

1. 무역사절단 수행

- 가. “마케팅기관”은 “선정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지원범위 및 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때 “마케팅기관”은 해당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나. “센터”는 가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다. “무역사절단지원”을 착수한 “마케팅기관”은 바이어발굴 및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포함한 수행일지를 수행일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무역사절단지원” 수행과정에 대해 “센터”에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지원범위

- 가. “마케팅기관”은 계약완료시까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원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내 “선정기업”의 비협조, 사업포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나. 가항의 상당한 이유로 계약 기간 내 “선정기업”에 대한 “무역사절단지원”이 미흡할 경우, “마케팅기관”은 사후 관리를 통해 “선정기업”의 “무역사절단지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내용

가. 본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내용	세부내용
항공, 교통, 통역지원	(항공) 1개사 1인 왕복 항공료 50% 지원(이코노미 기준) (교통) 무역사절단 파견 기간 내 현지 전용 버스 상시대기(50인승 버스) 공항, 호텔 간 전용차량 이용(장애인 지원차량 및 현장 인원 1:1밀착 지원) (통역) 업체와 품목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파악한 통역원 기업 당 1인 밀착 지원하며, 현장에서 바이어 미팅 시 상담일지 작성 지원
현지 바이어 발굴 및 검증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인터뷰를 통해 참여가 확실 시 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매출, 수입규모, 홈페이지 및 기타 정보를 통해 미팅 적합성 검증
바이어 대상 온라인 마케팅 지원	현지 전문 마케터를 통한 참가기업의 제품정보, 제품사진 등이 수록된 기업별 영문 거래제외서 제작 및 수출상담회 초청장 제작 지원
상담장 구성	상담장 홍보물 및 테이블 설치, PC 및 필요 기자재 비치, 바이어 대기 공간 운영

나. 가항 외에 “선정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 “마케팅기관”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집체교육

- 가. “마케팅기관”은 “선정기업”에 대한 “무역사절단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역사절단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나. “마케팅기관”은 “센터”와 협의 후 집체교육 횟수와 일정, 장소 등을 정하여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사후관리

1 사후지원

1. “수출지원” 종료 후 “센터”는 “선정기업”에 지속적인 추가지원안내, 지원시책 정보제공 등을 통해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센터”가 1항의 사후지원에 외부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3. “센터”는 “선정기업”의 수출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안내책자(유인물)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2 성과관리

1. “선정기업”은 “수출지원”후 “센터”의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지원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2 “센터”의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에는 수출실적, 매출액 등이 포함된다.

3 제재조치

1. “센터”는 “선정기업”이 “지원금”의 지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선정기업”에 대해 “센터”의 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를 진행할 수 있다.
 - 가. “지원금”의 지급 이후 타 기관 및 단체의 보조사업을 통해 동일 지원 건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5장 기타

1. 이의신청 및 처리

- 가. “선정기업” 및 “마케팅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본 지침 및 계약서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선정기업”과 “마케팅기관” 간의 분쟁발생 사항
 - 2) 중간, 완료 점검 및 마케팅 관련 이의 제기 사항
- 나. “센터”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심의 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현장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센터”에서 자체 검토할 수 있다.
- 다. “센터”는 이의가 제기된 과제에 대하여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지급 및 계약체결 등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 비밀유지

“센터” 및 “마케팅기관”은 “마케팅지원”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우수과제발굴

“센터”는 “수출지원”을 통해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서류보관

“센터”는 “수출지원”과 관련한 서류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 “중기부” 등의 관련자료 제출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5. 해석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2018.04.04.>

-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18.06.22.>

-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19.02.27.>

-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20○○년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내용은 수출을 위해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출제품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주요품목	
용도 및 특성 ^{주1)}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주2)}	
국내외 경쟁업체 현황 ^{주3)}	

주1)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

주2)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위주로 하되 자사제품의 핵심기술 보유여부를 포함하여 기술

주3) 경쟁업체 현황은 경쟁업체명, 시장점유율 등 기술

2. 해외 규격 및 인증 획득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 인 기 관	허가(승인)일자

3. 해외마케팅 계획 (각 200자 내외)

○ 추진계획	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수출 추진계획
○ 수출전략(향후 3년내)	수출대상국, 선정사유, 환경, 수출전략
○ 기대효과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브랜드 이미지 제고, 바이어 확보 등)

20〇〇년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설문조사표*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1.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팩스안내 ④ 정책순회설명회
 ⑤ 기타 _____

2.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의 지원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지원절차	①	②	③	④	⑤

2-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3.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럼 ② 비교적 그럼 ③ 보통임 ④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3-1. 그렇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4.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1.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5. 마케팅기관의 평가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6. 마케팅기관의 선정은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과 같이(센터에서 매칭) ② 업체 자율 선정 ③ 기타

6-1. 기타인 경우는?

7. 금번 지원사업 과정 중에 느낀 점, 보완점이나 추가로 필요한 수출지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8. 신규 추진해야할 정책이나 지원방법에 대한 의견을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해 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조사에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〇〇년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계획서	
작성요령	<p>아래 내용은 수출을 위해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p> <p>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1. 수출제품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주요품목	
용도 및 특성 ^{주1)}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주2)}	
파견국 시장 현황 분석 ^{주3)}	

주1)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

주2)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위주로 하되 자사제품의 핵심기술 보유여부를 포함하여 기술

주3) 파견국 시장 현황을 분석한 내용 기술

2. 해외 규격 및 인증 획득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 인 기 관	허가(승인)일자

3. 수출 실행계획 (각 200자 내외)

○ 추진계획	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수출 추진계획
○ 수출전략(향후 3년내)	해당 수출국 선정사유, 환경, 수출전략
○ 기대효과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거래선 확보, 기업 브랜드 홍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약서

(20○○년도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당사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 참가제한 사항에 대해 확인 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및 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으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중복 수령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추후 참가제한에 해당하는 내용과 중복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기 수령한 지원금을 즉시 반환함은 물론 향후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모든 지원 사업에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_____ 대표자 _____(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2000년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선정평가표(공통)

지원분야		업체명 (지원자명)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업
------	--	---------------	--	------	--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정량 평가 (30점)	고용 기여도	5	4	3	2	1		
	최근3년 센터직접지원사업 수혜횟수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5	4	3	2	1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10만불~5만불	5만불~3만불	3만불 미만	없음		
		10	7	5	3	1		
	국내외인증 (특허, 벤처, 성능인증 등)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5	4	3	2	1		
	기술기반 업종여부 (5점)	분야	세부내용					
		기술기반 제조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분야의 제조·서비스기술					
		지식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분야의 S/W(시스템) 및 설계기술					
정성 평가 (70점)	수출제품 경쟁력 (20점)	제품의 특성 및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기술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수출추진계획 (20점)	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수출 추진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수출추진전략 (15점)	수출대상국, 해당국 선정사유, 시장환경 분석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지원효과성 (15점)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가점(10점)	<input type="checkbox"/> 중증 장애인 여부(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고용(2점) <input type="checkbox"/> 센터 교육 수료 여부('18년 이후 수료만 인정)(2점) <input type="checkbox"/>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2점) <input type="checkbox"/> 센터 시제품제작 지원업체(2점) <input type="checkbox"/> 여성 장애인기업 여부(2점)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여부(2점)							
심의점수 합계 (110)	()점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326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5)	3-A (미국낙농 및 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AP (미국장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소비자제품안전개선편법)	
	CTI (미국냉각탑협회, 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Green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 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SA (미국연방조달청)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구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ETL (Warnock Hersey Mark)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NNR (라인강함해중양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유럽 (28)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 ISO 20471 (반사색안조끼인증)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에대한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C No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3)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L (독일선급협회)	GS (독일품질안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 (8)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일본 (25)	BAA (일본전자기술인)	BOKEN (일본방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PVM (일본태양광인증)	JHOSPA (일본위생수지협회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PAL (일본의료기기)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 (Product Safety Consume-일본 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JAPAN MI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9)	CU (러시아강제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 (러시아)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 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말레이시아 (2)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TFDA (대만의료기기)	
브라질(3)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1)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1)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4)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11)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RDSO (인도철도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국가별 (자원전수)	규격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인도네시아 (3)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B 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6)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HG/T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중국농업관련인증)	MOH (중국보건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IM (중국계량과학원)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 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위생허가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캐나다(7)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제품통합인증)		
페루 (1)	Registrosanitario (보건등록증)		
폴란드 (1)	B mark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1)	ERC		
라오스 (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3)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화학제품등록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호주 (11)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자전자장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국가별 (자원전수)	규격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 회)		
이란(2)	MOH (이란보건부등록)	ISIRI (이란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레 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ESMA	
국제 (59)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 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 의인증)	BRC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 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회)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 증)
	ISO 7096 (토경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compost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래벨등급인증)
	SINCERT	TCO05	The Skin Cancer Foundation's

국가별 (지원전수)	규격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기타 할랄인증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